

임원의 선임·해임·사임보고

※ 법 제418조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·해임(사임)시 작성한다.

가. 임원의 선임 현황

성 명	정성호		
직 위	대표이사		
상임여부		감사위원 여부	
주민등록번호	890120-		
학 력 ¹⁾	2008.09~2015.12 Northeastern University (졸업) 2004.09~2007.06 St.Andrew's School 고등학교 (졸업)		
최근 5년간 경력 ²⁾³⁾	2017.11~현재 (주)과이어스톤투자자문 대표이사(현) 2017.06~2017.10 (주)아이포스투자자문 주임 2016.01~2017.06 뉴타워중개법인 사원		
선임일(최초선임일 ⁴⁾)	2017.12.12	연임여부	연임
임기만료일			
비고			
<p>주 : 1)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2) 경력란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()내에 현직임을 표시<예 : 96.2~ △△(주) 대표이사(현)> 3) 겸직하고 있는 직위의 경우 겸직 표시<예 : 99.2~ △△(주) 대표이사(현, 겸직)> 4) 최초 선임의 경우 '최초선임'이라고 표기하고 연임의 경우에만 당해 직위의 최초 선임일을 기재</p> <p>■ 첨부서류</p> <p>임원의 선임(대표이사 변경 포함)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</p>			

다. 임원 선임 심사표

성 명 ¹⁾	정성호	직 위	대표	직전 근무처 및 직위	
심 사 항 목			심 사 결 과		비 고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			해당사항 없음		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,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(이하 “금융관련법령”이라 한다)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(법 또는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		해당사항 없음		
5. 법,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(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)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6. 법,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7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(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
심 사 항 목	심 사 결 과	비 고
<p>8.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,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,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해임요구: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. 직무정지: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. 문책경고: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</p> <p>9.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,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,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면직요구: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. 정직요구: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. 감봉요구: 감봉요구일부터 3년</p> <p>10. 법,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직무정지 또는 정직: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. 문책경고 또는 감봉: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</p> <p>11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(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)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12.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</p>	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	
<p><u>종합 의견</u> 대표이사 선임에 적정.</p>		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 년 12 월 29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주)파이어스톤투자자문 대표이사 정성호 (인)</p>		

■ 첨부서류

1.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 및 금융투자업자 임원 약력표
2. 심사항목 3 및 4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
3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)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5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